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2021년 중견기업 R&D 사업 통합설명회

2021. 1



CONTENTS

I

사업개요

II

신청요건

III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IV

신청 및 서류작성 방법

V

향후 일정 및 문의처

I

사업 개요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

사업목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관계·피출자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해 **세계적 중견기업으로의 성장 추진**

지원대상

관계·피출자
중견기업

+

직전년도 매출
1,000억원 미만

+

3년 평균 R&D집약도 2% 이상
또는 연구인력 10% 이상

지원내용

총 6개 과제 지원 과제당 최대 2년, 연간 3억원 이내

- 관계·피출자 중견기업과 모기업, 외부혁신 주체간 협력을 통해 신사업·신산업 분야 진출 지원
- 모기업 투자 연계를 통한 기업간 상호 시너지 효과 창출
 - ▶ 모기업은 총 사업비의 30%이상 현금 혹은 현물 투자 의무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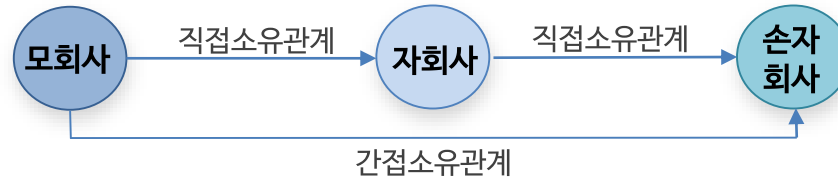
신청요건





1 관계·피출자 중견기업

피출자 중견기업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국내외 기업 또는 법인이 30% 이상의 주식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모)기업 단독 또는 (모)기업의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최다 출자자인 경우



관계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의2를 준용하여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 중 주식 등 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중견기업 업종별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①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는 관계기업인가?

② 주식 등 소유비율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가?

유형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특수 관계자와 합산하여

유형2 지배기업이 그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유형3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유형4 지배기업의 특수관계자가 지배기업의 자회사와 합산하여

유형5 지배기업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기업과 지배·종속 관계 성립

종속기업의 주식등을 30%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 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확인 가능

2 직전년도 매출 1,000억 원 미만인 기업

3 최근 3년 평균 R&D 집약도가 2%이상 이거나 연구인력 비율이 10%이상인 기업

R&D 집약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합계가 2% 이상

연구인력 비율 전체 종업원 수 대비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및 연구인력현황 상의 연구인력이 10% 이상

* 연구인력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인력현황을 통해 확인(증빙) 가능

참여
기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기관 (단, 대기업 제외)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1조 제 2항 및 같은 법령의 시행령 제 11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 2조 제1항, 제 3호, 제 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 5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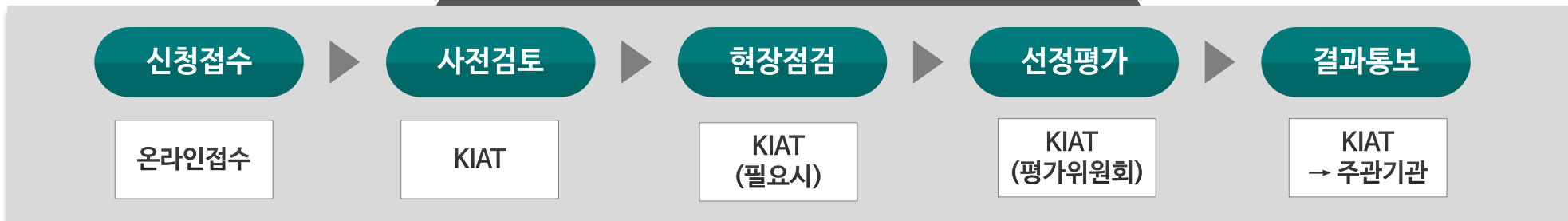
III






평가절차 및 평가항목



III -1 평가절차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기업 선정 절차



-  신청접수
 - K-PASS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사전 검토
 - 신청요건 확인
 - 매출액, R&D집약도, 연구인력 비율 등 요건 검토 및 심사
-  현장점검
 - 사점 검토 등에 따라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지원대상 부적격 기업 선별(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산재, 불공정, 체불 등)
-  선정평가
 -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 실시
 - 평가 결과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
-  결과통보
 -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사업계획서 등을 통해 기술성(60)과 사업성(40) 평가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기술성 (60)	기술개발 개요	▪기술개발의 성과인 최종산출물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30
		▪기술개발 내용의 혁신성, 차별성 및 질적 우수 역량	
	목표 및 추진내용	▪사업 시행계획과 제시된 사업계획 목표의 부합성, 사업 이해도	30
		▪추진계획 및 추진내용에 대한 명확성, 타당성	
▪모기업 역할 및 투자계획에 대한 추진 기여도			
사업성 (40)	사업화 계획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및 향후 시장 분석·예측 등의 적절성	10
		▪개발결과의 실용화·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매출 효과	▪매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및 신규시장 창출 등 기대효과	15
		▪동종 분야 동반성장 기여도 및 파급 효과	
일자리효과	▪일자리양(고용증가)과 질(성과공유, 근로환경) 등 고용창출 효과	15	
계			100

*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

아래의 경우 선정 평가 시 최대 5점까지 우대가점 부여

1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및 제품이 신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3점)

* 산업기술혁신계획('19~'23)에 따른 5대 영역 분야별 차세대 100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기업
5대 영역 : 수송, 건강관리, 생활, 에너지·환경, 제조

2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 및 제품이 소재·부품·장비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3점)

* 소재·부품·장비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

3 연구추진체계 상 국내외 산학연 등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우 (3점)

* 관계·피출자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모기업,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과의 협업 기반 혁신 활동(공동 연구개발 등) 지원

4 최근 5년 이내 M&A를 통해 관계·피출자가 된 중견기업이 신청한 경우 (3점)

* 중견기업 주도의 중소·벤처, 스타트업 등 혁신기업 발굴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최근 5년 이내 M&A를 통해 관계·피출자 중견기업이 된 경우

5 성과활용평가 우수과제 수행기관인 경우 (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44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아래의 경우 선정 평가 시 **최대 5점까지 감점 부여**

1 2년 이내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 수행 이력 보유(3점)

* 최근 2년 이내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인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2 3년 이내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포기한 경력 보유(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

3 3년 이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IV

신청 및 서류작성 방법



신청 방법

-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사전 등록 (20.12.22~21.1.28)
- 서식 교부 및 접수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사업관리시스템

접수 절차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사업관리시스템 신규 회원 가입(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② 온라인 등록
: 주관기관 로그인 → 주요업무 → 과제신청 → 공고조회 →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사업 선택
- ③ 파일 업로드
: 첨부된 서식을 받아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업로드
사업계획서의 경우 hwp 파일로 제출, 사업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스캔하여 pdf 파일 제출
- ④ 온라인 제출 최종확인 (접수확인)

사업계획서 세부내용

- ✓ 비전문가도 사업계획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 처리
- ✓ 사업계획서 작성시 허위, 위·변조 등 부정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해약
- ✓ 전체 분량 50쪽 이내(별첨 제외), 글자 크기 12pt 권고
- ✓ 제출시 사업계획서 서식 내 작성요령 삭제

1.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관련 현황

1.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 기본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으로 서술, 용도 및 적용 분야 구체적 서술

2.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 기술·경제·산업적 중요성과 필요성

3. 국내·외 기술과 시장현황

● 기술 동향,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4. 관련 지식재산권과 표준화 현황

● 현황에 따른 선행특허조사 및 특허동향조사 실시 결과

사업계획서 세부내용

2. 기술개발의 목표와 추진체계

1. 최종 목표 및 평가방법	● 목표 항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평가방법 및 환경
2. 연차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	● 최종목표와 기술적 측면에서 상호연계성 유지, 개조식 작성
3. 기술개발 추진방법 및 체계	● 수행방법, 예상되는 장애요소 및 해결방안, 모기업 투자계획 및 역할
4. 기술개발 팀 편성도	● 기관별 담당 기술개발 내용

3. 수행기관 현황

1. 총괄책임자	● 인적사항, 학력, 경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등
2. 참여연구원 현황	● 참여연구원, 여성참여인력비율, 신규인력 채용 계획
3. 연구시설/장비 보유 현황 및 연구실 (시설·장비) 안전조치 이행계획	● 연구시설·장비명, 수량, 활용도 및 시기 명확히 기재 (중요도 순) ●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안전책임자, 교육 등
4. 기관(기업) 정보 현황	● 기업 기본 정보 (재무제표 상의 수치 기준)
5. 수행기관의 국가 R&D 수행현황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 모든 수행기관의 기술 이전 및 사업화 발생 실적

R&D사업계획서 세부내용

4. 사업화 계획

- | | |
|--------------------|--|
| 1. 본 과제를 통한 생산계획 | ● 개발 종료 후 국내/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 판매단가, 매출액, 생산능력 |
| 2. 본 과제를 통한 투자계획 | ● 개발 종료 후 인력, 인프라 등 투자계획(매출원가/판매관리비/자본적지출로 구분) |
| 3. 본 과제를 통한 사업화 전략 |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 사업화 추진계획(수행기관 중 기업만 작성) |

5. 총사업비

- | | |
|---------------------------------|---------------------------------|
| 1. 연차별 총괄 | ● 총 수행기간 동안 소요되는 개발 비용 총합계 |
| 2.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분담내역 | ● 연차별 수행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분담 내역 |
| 3. 정부출연금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배분내역 | ● 연차별 수행기관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분담 내역 |

6. 연도별 사업비 세부내역

- | | |
|------------------|---|
| 1. N차년도 사업비 소요명세 | ● 연차별 사업비 세부내역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등 비목별로 자세히 작성 |
|------------------|---|

IV -3 모기업 투자확약서 작성방법

모기업 투자확약서 세부내용

모기업 투자 확약서

사업명	강소벤처형 중견기업 육성	과제번호	
과제명 (과제번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모기업		법인등록번호	
모기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협약기간		해당 연도 수행기간	
해당 연도 모기업 투자 (천원)		확약일	20 년 월 일

○ 투자 계획서

구분	금액(천원)	총사업비 대비 비율(%)	용도
총 사업비(정부+민간)		100	
모기업 투자비			
현금			
현물			

* 모기업 투자 금액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이어야 함
 * 투자금액 중 현금은 70% 이상, 현금은 30% 이하로 투자 가능함
 * 현금의 경우 통장사본을 통해 증빙하여야 하며, 현물의 경우 연구비 및 실험장비, 기자재, 기술이전 등을 말하며 객관적인 기술 가치 평가를 통해 증명(모기업 내부 임차료는 불인정)

위 과제 관련하여 주관기관의 모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 모기업 투자금을 상기 입금 확약일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협약 해약, 출연금 환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이 이루어짐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모 기업: (기업명) (대표자) (인) ←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구분	금액(천원)	총사업비 대비 비율(%)	
총 사업비(정부+민간)	10억원(5억+5억)	100	
모기업 투자비	3억원	30	
현금	2.1억원		
현물	0.9억원		

(예시) 총 사업비 10억원(정부 출연금 5억원, 민간 부담금 5억원) 경우
 모기업 투자비 3억원(10억원 * 0.3)
 (2.1억원(3억원*0.7)이상 현금, 0.9억원(3억원*0.3)이하 현물)

- ✓ 모기업 투자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상
 - ✓ 모기업 투자 금액 중 현금은 70% 이상, 현물은 30% 이하
- 현금 : 통장 사본을 통해 증빙**
현물 : 연구비, 실험장비, 기자재, 기술이전 등, 객관적인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증빙 (모기업 내부 임차료 불인정)

V

향후 일정 및 문의



향후 일정

시행계획 공고	신청접수	I 단계 사전검토	II 단계 현장점검 (필요시)	III 단계 사업계획서 등 평가	IV 단계 평가결과 통보	선 정
'20.12.22	~'21.1.28	'21.2월	'21.2월	'21.3월	'21.3월	'21.4월
산업부	KIAT	KIAT (평가위원회)				산업부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 02-6009-35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